

대한민국시민연극제 운영규정

2025. 02. 17. 제정

(사) 한국연극협회

대한민국시민연극제 운영(심사)규정

제1조 (명칭)

본 규정은 대한민국시민연극제(이하 '본 대회'라 한다)의 운영(심사)규정이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대회의 목적은 연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통한 소통과 교류,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예술 향유 기회와 의식 수준을 높여,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.

제3조 (주최 및 주관)

본 대회는 대한민국연극제 부대 프로그램으로 (사)한국연극협회(이하 '본 협회'라 한다)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회에서 주관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연극제 개최지에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지와 주관처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 (조직위원회)

본 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협회에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 조직위원장은 본 협회 이사장이 맡고, 조직위원은 본 협회 이사들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조직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본 대회의 종합계획(안) 수립 및 대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행정지원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구성한다.

제5조 (집행위원회)

본 대회를 개최하는 지회에서 집행위원회를 구성, 운영한다. 집행위원장은 (주관 시, 도) 지회장이 맡고, 집행위원은 지회 이사들로 구성하며,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인사를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지와 주관처가 변경될 경우,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의 동의하에 별도 구성할 수 있다. 집행위원회는 행사 시작 4개월 전까지 본 대회 운영계획 및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실무 집행 및 운영을 담당한다.

제6조 (참가단체)

본 대회의 참가단체는 본 협회의 정단체가 아니며 비전문연극인들로 구성된 시민연극단체이어야 한다.

제7조 (참가자격)

시민연극제 출연자는 본 협회와 예술인복지재단 등에 가입하지 않은 비전문연극인이어야 한다.

단, 스태프의 경우 전문연극인의 참여가 가능하다.

제8조 (경연참가작품)

국내 작품 또는 해외 작품 모두 참가할 수 있다. 단, 참가신청서 제출 전까지 저작권상의 문제를 해결한 작품에 한한다.

제9조 (경연참가제한)

다음 항을 위반했을 경우 본 대회 참가를 제한한다.

- ① 본 대회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개인이나 단체
- ② 참가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

제10조 (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)

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전문 연극인 중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주최 측에서 2인을 위촉하고, 주관처에서 1인을 위촉한다.

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심사위원은 부문, 성별, 연령, 활동 지역(권역별)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, 특정 장르나 성별, 지역의 심사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.
-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
제11조 (심사항목 및 심사기준)

본 대회의 예선은 서류 및 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반드시 해당 공연의 연습 혹은 공연 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. 본선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.

내용	배점
연기와 앙상블 (배려와 협력)	30
공연의 완성도 (연출, 무대, 연기 등의 조화)	30
작품의 창의성 (가치 있는 시도)	15
관객 호응 및 대중성	15
참가 요강 준수 의무	10
계	100

제12조 (수상자 결정)

채점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단체상·개인상의 항목별 순위를 정한다. 수상 내역은 제14조 시상 훈격의 내용을 따르되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. 특별상의 경우에는 주최 측에 최소 3일 전에 내용과 시상 근거를 알려야 한다.

제13조(심사방법)

- ① 심사위원은 사전에 수상 결과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추천된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토론하여 전원 합의에 의해 상위 훈격 순서대로 수상단체 및 개인수상자를 결정한다.
- ③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 단체 및 개인 수상자를 결정한다.
- ④ 심사위원회는 총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2회로 개최할 수 있다.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를 작성, 모든 공연이 종료된 후 (2차 회의 후) 주최 측에 제출한다.
-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 총평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⑥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사전 심사회의 시 심사회피제를 실시한다.

제 14조 (시상훈격)

부문	등위	내용	시상훈격	부상	시상인원
작품의 완성도	단체상	대상	주관지자체 시장(군수)상	상금 3,000,000원	1
		최우수상	주관지자체 시·도의회 의장상	상금 2,000,000원	1
		우수상	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	상금 500,000원	1
			(사)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상금 500,000원	1
		관객 평가상	(사)한국연극협회 주관 시도 지회장상	상장 및 트로피	1~2
	개인상	최우수연기상	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		1
			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		1
		우수연기상	(사)한국연극협회 주관 시도 지회장상	8	

※ 관객 평가상은 관객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시상할 수도 있다.

제15조 (심사결과)

심사결과는 시상식장에서 발표하며 한국연극협회 홈페이지와 대한민국연극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16조 (심사운영)

본 대회는 공정성과 공신력을 최선의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 회의를 운영한다.

- ① 주최 측은 심사에 있어서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심사위원이 철저하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본 대회의 본선 경연 내용은 정확한 일시 및 장소가 표시된 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.

제17조 (변경)

본 규정은 규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,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 (2025. 02. 17.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